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4094
등록일자	2016.1.29.
결재일자	2016.2.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희망복지지원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	
이순옥	옥미정	김구연	전결 02/01 김효길		
협조자					

-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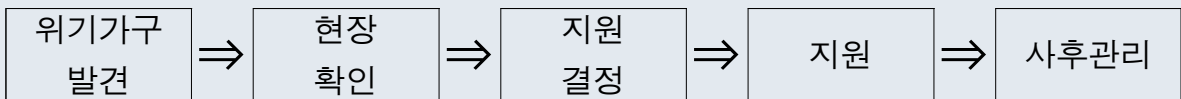
## 2016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계획

- 추진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
- 지원기준
  - 소득기준

(단위 / 원)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중위소득 75%이하	1,218,623	2,074,495	2,684,264	3,293,576	3,902,888	4,512,199

- 일반재산기준(대도시) : 189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1,000만원 이하
- 위기상황 인정 사유 :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
- 지원절차



- 지원내용
  - 의료, 생계, 주거 등 맞춤형 물품 지원

강 남 구  
(복 지 정 책 과)

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• 2016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(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-1246호(2016.1.20.))
<b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
<b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시비 100%
<b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
<b>분야별 검토사항</b> (계속 : 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<b>타 기관 사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
<b>전문가 자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.

-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-

# 2016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계획

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

## 1 지원근거

-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 희망플랜 2.0 선정 사업

## 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1 ~ 2016. 12
- 지원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
- 지원기준
  - 소득기준

(단위 / 원)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중위소득 75%이하	1,218,623	2,074,495	2,684,264	3,293,576	3,902,888	4,512,199

- 일반재산기준(대도시) : 189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1,000만원 이하
- 위기상황 인정 사유 :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

###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

-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**동 사례회의의 거쳐 지원** 가능

- 사업예산 : 총 66,000천원(시비 100%)
-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, 저소득주민지원, 서울형 긴급복지지원, 일반보상금, 사회보장적수혜금

### 3 세부추진방법

- 지원내용
  - 현물이나 현금지원 가능
  - 지원항목 :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, 주거,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 
예) 식사지원, 생필품, 난방연료, 입원 수속금 등
  - 지원금액 : 가구 30만원,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  
(담당자 선 지원 시 20만원 이내)
  - 지원횟수 : 1회 원칙, 선지원의 경우 20만원의 한도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

- 지원절차
  - 지원대상 결정 : 동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물품, 금액 결정  
※ **담당자 선지원 제도** :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 승인

#### · 동 사례회의

- 공무원 3인이상 포함 자율구성
- 위기가구 판단, 지원내용 결정, 기준 초과자 지원 여부 심사, 선지원 후 사후 승인

- 지원방법 : 현물이나 현금지원 가능
  - 일상경비 카드로 물품 구입 후 위기가구에 직접 지원
  -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: 사례회의 후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
- 사후관리 :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
  - 희망복지지원단에 통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
  -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타 지원제도(국기초, 서울형기초, 국가 긴급복지 등), 민간 후원(희망온돌,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, 희망마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) 연계

- 세부계획 시달 : 구청 ⇒ 동주민센터
- 매월 집행 실적 제출 : 동주민센터 ⇒ 구청
- 일상경비 카드로 집행 후 영수증 제출(매월 말) : 동주민센터 ⇒ 구청
-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통장으로 입금 : 구청. 끝.